

제1조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 총액 및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회 계 별	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계		4,156,784,000	124,703,520
일 반 회 계		3,430,200,000	102,906,000
특 별 회 계		726,584,000	21,797,520
	기 타 특 별 회 계	469,929,000	14,097,870
	의 료 급 여 기 금 운 영	380,139,000	11,404,170
	치 수 사 업	24,207,000	726,210
	경 도 대 학	7,812,000	234,360
	광 역 교 통 시 설	7,571,000	227,130
	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	50,200,000	1,506,000
	공 기 업 특 별 회 계	256,655,000	7,699,650
	지 역 개 발 기 금 운 영	256,655,000	7,699,650

제2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예산” 과 같다.

제3조 2008년도 지방채발행한도액은 145,000백만원으로 한다.

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2,000백만원으로 한다.

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(단위:천원)

회 계 별		예 산 액	전년도 예산액	증(△)감	증 감 비 율
계		4,156,784,000	3,908,543,000	248,241,000	6.4
일 반 회 계		3,430,200,000	3,151,657,000	278,543,000	8.8
특 별 회 계		726,584,000	756,886,000	△30,302,000	△4.0
	의료급여기금운영	380,139,000	381,660,000	△1,521,000	△0.4
	치 수 사 업	24,207,000	32,844,000	△8,637,000	△26.3
	경 도 대 학 운 영	7,812,000	6,768,000	1,044,000	15.4
	광 역 교 통 시 설	7,571,000	7,606,000	△35,000	△0.5
	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	50,200,000	46,710,000	3,490,000	7.5
	지역개발기금운영	256,655,000	281,298,000	△24,643,000	△8.8